

(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)

<앞쪽>

접 수	접수번호	
	접수일자	
	접수자	(서명)

신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 
뒷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 
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  
보시기 바랍니다.

# 국외부재자신고서

성명 <sup>1)</sup>	한글	영문 (대문자)		
여권번호		※ 여권번호는 왼쪽부터 기재합니다.		
주민등록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 (주민등록표상)	(시·도)	(구·시·군)	(읍·면) (대로·로·길)
연락처 ※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전화번호 <sup>2)</sup> (가정·직장 등)	(국가번호)	(지역번호)	(전화번호)
	휴대전화번호 <sup>2)</sup>			
	전자우편 <sup>3)</sup> (E-mail)			
국외거소 <sup>4)</sup> (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) ※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거류국명		우편번호	
	주소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관을 거소로 신고할 사람 (☑표한 후 “주소” 칸에 공관명만 기재)		<input type="checkbox"/> 투표예정공관 <sup>5)</sup>
본인은 「국적법」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4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며,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, 주민등록정보, 수형정보,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				
년 월 일 신고인 <sup>6)</sup> : (서명 또는 날인)				
구·시·군의 장 귀하				

※ 국외부재자신고는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제출(방문, 우편 또는 전자우편)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(<http://ova.nec.go.kr>)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.

※ 유 의 사 항

1. 이 신고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불이익(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미등재, 선거정보 수신불가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
※ 작 성 요 령

1. “성명”칸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(영문포함)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.
  - ☞ 다만,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을 적습니다.
2. “전화번호”와 “휴대전화번호”칸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·사무실 등의 전화번호(국가번호-지역번호-전화번호)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  - ☞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 요건확인,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, 투표기간·장소 등 안내,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됩니다.
3. “전자우편(E-mail)”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·발송하는 정당·후보자 정보자료 송부,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여부 통지, 이의신청 결과 안내, 투표기간·장소·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·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4. “국외거소”칸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대문자(현지어 함께 기재 가능)로 반드시 점선 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  - ☞ 다만, 직장·생업·이사·주소불확정·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지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 표시 후 “주소”칸에 공관명만을 적습니다.
5. “투표예정공관”칸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적습니다.
6. 끝부분의 “신고인”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